

## 『양자융합산업 전환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반 교육』 참여기업 모집 공고

『양자융합산업 전환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반 교육』을 다음과 같이  
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8월 28일  
한국나노기술원장

### 1. 교육개요

#### ☐ 목적

- 경기도 기업의 양자·AI·반도체 융합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산업전환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통해 도내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 육성

#### ☐ 지원대상 : 양자·AI·반도체 융합산업을 활용한 신사업 진출 또는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, 교육을 통해 양자·AI·반도체 융합산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려는 기업

#### ☐ 교육기간 : 2026년 8월 ~ 11월 기간 내 기업이 제안하는 일정

#### ☐ 교육장소 : 한국나노기술원 또는 기업 지정 장소

#### ☐ 교육인원 : 기업 당 5인 이상

※ 참가자는 접수 마감일 현재 재직 중 이어야 합니다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).

#### ☐ 교육기업수 : 4 개 기업

## 2. 신청자격

### ☐ 경기도 소재 양자·AI·반도체 관련 중소·중견기업

※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(본사 또는 사업장 포함), 공장등록증명서, 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
## 3. 사업내용

### ☐ (양자융합산업 전환을 위한 기업 맞춤형 기반 교육) 양자·AI·반도체 융합기술 전환을 모색하거나 미래 양자산업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 한국나노기술원의 공공팹 및 기술을 활용하거나, 또는 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는 기업 맞춤형 교육사업

※ 사업 신청 시 제안서에 포함된 교육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.

※ 기업이 강사, 교육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, 적절성 평가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

※ 기업에 현금(사업비)을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,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

## 4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☐ 신청기간 : 2026년 8월 28일(금)12:00 ~ 9월 11일(금) 12:00

☐ 신청서류 : 신청서와 제안서 등 구비서류 [붙임] 참조

☐ 신청방법 : 신청서류 E-mail(sangwuk.lee@kanc.re.kr) 제출

☐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 등 문의

| 주관기관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         | 전 화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나노기술원<br>경기도 양자AI 융합기술센터 | 이상욱<br>연구원 | 031-546-6031 | sangwuk.lee@kanc.re.kr |

※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가급적 E-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5. 선정방법

### ☐ 평가방법

- 신청기업의 지원신청서 접수, 신청자격 검토, 평가위원회 구성 및 신청서류 서면 평가

### ☐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

- 양자·AI·반도체 융합산업전환, 양자산업을 대비한 양자과학기술 교육계획, 기술성(혁신성),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

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| 배점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◦ 기업의 산업전환 및 고도화 의지 | 20  |
| ◦ 교육의 필요성           | 20  |
| ◦ 교육계획의 적절성         | 25  |
| ◦ 교육비 편성의 적절성       | 20  |
| ◦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     | 15  |
|                     | 100 |

- 교육의 필요성과 양자융합산업전환 가능성 우선 평가

- 기업별 제안 교육비는 1,000만 원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,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☐ 평가 결과는 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개별 통보되며, 결과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

## 6. 기타사항

- ☐ (사전 협의) 선정된 업체는 한국나노기술원과 개별 논의하여 교육에 필요한 일정, 환경(장치/시설이용 등), 전문가(교수, 강사, 퍼실리테이터(Facilitator) 등)를 확정 후 시행

※ 신청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대표·임직원과 특수관계가 있는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를 활

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관계를 밝혀야 하며, 사업비 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다른 교육수행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.

## □ 지원제외대상

※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신청이 가능함

-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 - 가. 부도기업
  - 나. 법정관리, 화의기업(단,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)
  - 다. 개인회생·파산·면책권자(참여기업 대표, 과제책임자 등)
  - 라.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장'인 중소(견)기업
  - 마.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중소(견)기업
- 접수 마감일 기준 참여기업 대표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「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」 제6조, 「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범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(2024.1.19.)」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범위반 사실(1회 이상)이 있는 기업 및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범위반 사실 확인 시(범위반사실여부 확인서 내용과 상이) 사업취소·보조금 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
※ 위반사실 적용 법률: 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

### 주의사항

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됨

- ①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배제
- ②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- ③ 경기도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